

|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K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U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UH)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UH)(EI892)
2.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3. 판 매 회 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4. 작 성 기 준 일: 2026년 06월 0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0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25년 03월 05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Disclaimer(법적 책임 등)

“Standard & Poor’s®”, “S&P®”, “S&P500®”, “Standard & Poor’s 500”는 McGraw-Hill, Inc.의 등록상표이며, KB자산운용(주)에 의한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McGraw-Hill Companies, Inc.의 일부인 Standard & Poor’s(“S&P”)는 본 투자상품을 보증, 지지, 판매 또는 판매촉진하지 않습니다. S&P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또는 특히 본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적부 및 S&P 지수가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성과를 반영하는 능력 등에 관하여 본 투자상품의 투자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장 또는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S&P와 라이선스 이용자 사이의 유일한 관계는 “(가) S&P의 특정 등록상표와 상호, 그리고 (나) 라이선스이용자 또는 본 투자상품과 무관하게 S&P가 결정, 구성, 계산하는 S&P 지수를 라이선스”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S&P는, S&P지수를 결정, 구성 또는 계산함에 있어서 라이선스이용자 또는 본 투자상품의 투자자의 필요를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S&P는 본 투자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그 시기의 결정 또는 본 투자상품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산식의 선정 또는 계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참가한 바도 없습니다. S&P는 본 투자상품의 관리, 마케팅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P는 S&P지수 또는 이에 포함된 여하한 자료의 정확성 및/또는 완벽성에 관하여 보장하지 아니하며 이의 오류, 누락 또는 중단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P는 S&P지수 또는 이에 포함된 자료의 사용으로부터 라이선스이용자, 본 투자상품의 투자자 및 기타의 개인 또는 기관이 얻는 결과에 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장 또는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S&P는 S&P, 지수 또는 이에 포함된 여하한 자료에 대하여 그 시장성 또는 특정 목적 또는 책임을 이에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상기 사항에 더하여, S&P는 비록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손해, 징벌적 배상, 간접손해 또는 파생적 손해(일실이익 포함)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UH) [펀드코드: EI892]

| 투자위험등급 | | | | | | K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2등급(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집합투자기 구 재산의 60%이상을 미국주식 및 미국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주식가격 변동위험, 국가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이 요약정보는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UH)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미국주식 및 미국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미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단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0.8% 이내 | 0.900 | 0.350 | 0.900 | 0.900 | 171 | 266 | 365 | 576 | 1,185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없음 | 1.550 | 1.000 | 1.550 | 1.551 | 158 | 322 | 491 | 847 | 1,854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4% 이내 | 0.725 | 0.175 | 0.740 | 0.728 | 114 | 192 | 272 | 445 | 946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없음 | 1.000 | 0.450 | 1.010 | 1.002 | 103 | 209 | 320 | 555 | 1,233 |
| | <p>(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주2)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A-E 클래스와 C-E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31-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 | | | | | | | | | |
|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26-01-23 | - | - | - | - | - | | | | |
| | 비교지수 | 2026-01-23 | - | - | - | - | - | | | | |
| | 수익률 변동성 | 2026-01-23 | - | - | - | - | - | | | | |
| | <p>(주1) 비교지수: S&P500 지수(KRW)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p> <p>(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p> <p>(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 | | | | | | | | | |

|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주식파생형)(%) | | | | 운용경력년수 |
|------------|-----|-------|-----|------------|-----------|------------------------|-------|--------|--------|---------|
| | | | | 펀드수 (개) | 규모 (억)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운용전문 인력 | 김정아 | 1980년 | 책임 | 43 | 9,587 | 41.50 | 60.01 | 179.28 | 199.13 | 22년 1개월 |
| | 윤여두 | 1993년 | 부책임 | 39 | 8,826 | 42.01 | - | | | 6년 2개월 |
| | 이재민 | 1996년 | 부책임 | 42 | 9,613 | 41.50 | 60.01 | 2년 6개월 |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 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본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와의 물리적, 시간적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경제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
| 주요 투자위험 | 비교지수와 의 괴리발생위험 |
| 비교지수와 의 괴리발생위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추종하기 위하여 해당 비교지수의 주가지수선물과 주식 및 ETF 등에 투자 하되 주로 주가지수선물을 활용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아래의 제약 요인 및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하여 비교지수와와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약요소: 환율변동, 비교지수 산정시 적용되는 환율과 펀드 기준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환율의 차이, 선물투자시 현물과 선물과의 가격괴리, 투자대상 ETF와 지수와의 괴리,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선물만기에 따른 교체매매 비용, 상/하한가 제한,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투자대상 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운용/판매 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이용료와 같은 여러가지 운용관련 비용, 펀드의 소규모, 펀드 규모대비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 |
| 베이스스 위험 | 투자금액 중 일부가 주가지수선물로 운용되므로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증가 기준 베이스스의 일시적인 가격불일치(mis-pricing)로 비교지수(벤치마크)와의 괴리가 발생하여 환매가격 및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스스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식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의 차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계약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접근하나,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 수급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 자금 송환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 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 |

| | | | | |
|------------------|---|--|---|--|
| | 환율변동 위험 | <p>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p> | | |
| | | <p>매입방법</p> <p>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p> <p>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p> | <p>환매방법</p> <p>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영업일에 대금 지급</p> <p>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5영업일에 대금 지급</p> | |
| <p>환매수수료</p> | <p>해당사항 없음</p> | | | |
| <p>기준가</p> | <p>산정방법</p> | <p>-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 | |
| | <p>공시장소</p> | <p>판매회사 본·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p> | | |
| <p>과세</p> | <p>구분</p> | <p>과세의 주요내용</p> | | |
| | <p>집합투자기구</p> |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 | |
| | <p>수익자</p> |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계좌·클래스·펀드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
| <p>전환절차 및 방법</p> | <p>해당사항 없음</p> | | | |
| <p>집합투자업자</p> | <p>KB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67-82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kbam.co.kr</p> | | | |
| <p>모집기간</p> | <p>2025년 03월 05일부터 해지일까지</p> | <p>모집 매출 총액</p> | <p>10조 좌</p> | |
| <p>효력발생일</p> | <p>2026년 07월 09일</p> | <p>존속기간</p> | <p>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p> | |
| <p>판매회사</p> | <p>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p> | | | |
| <p>참조</p> | <p>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42-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 |
| <p>집합투자기구 종류</p> | <p>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p> | | | |
| | <p>종류(Class)</p> | | <p>집합투자기구의 특징</p> | |
| | <p>판매 수수료</p> | <p>수수료 선취(A)</p> | <p>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p> | |
| | | <p>수수료 미징구(C)</p> | <p>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p> | |
| | <p>판매 경로</p> | <p>수수료 후취(S)</p> | <p>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p> | |
| | | <p>온라인(E/e)</p> | <p>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 |
| <p>오프라인</p> | | <p>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p> | | |
| <p>온라인슈퍼(S)</p> | <p>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관련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p> | | | |

| | | |
|----|-------------------|--|
| | | 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무권유 저비용 (G) |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 퇴직연금 (퇴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 기관(F) |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이나,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랩,금전신 탁(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UH)

나. 종류

| 종류(클래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종류(클래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EI893 | 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EI901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EI894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EI902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EI895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EI903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EI896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EI904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EI897 | C-퇴직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EI905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EI898 | C-퇴직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EI906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EI899 | S-퇴직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EI907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 EI900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1)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투자신탁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1좌=1원, 원본액 기준)

※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이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2025년 03월 05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모집장소: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UH)

나. 종류

| 종류(클래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종류(클래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EI893 | 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EI901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EI894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EI902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EI895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EI903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EI896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EI904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EI897 | C-퇴직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EI905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EI898 | C-퇴직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EI906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EI899 | S-퇴직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EI907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 EI900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날 짜 | 주 요 내 용 |
|------------|----------------------------|
| 2026.01.23 | 최초설정 |
| 2026.07.09 |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이재민 → 윤여두/이재민)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 상 정해진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2-2167-8200)

※ 자세한 내용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26년 06월 02일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주식파생형)(%) | | | | 운용경력년수 |
|-----|-------|-----|------------|-----------|------------------------|-------|--------|--------|---------|
| | | | 펀드수 (개) | 규모 (억)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김정아 | 1980년 | 책임 | 43 | 9,587 | 41.50 | 60.01 | 179.28 | 199.13 | 22년 1개월 |
| 윤여두 | 1993년 | 부책임 | 39 | 8,826 | 42.01 | - | | | 6년 2개월 |
| 이재민 | 1996년 | 부책임 | 42 | 9,613 | 41.50 | 60.01 | | | 2년 6개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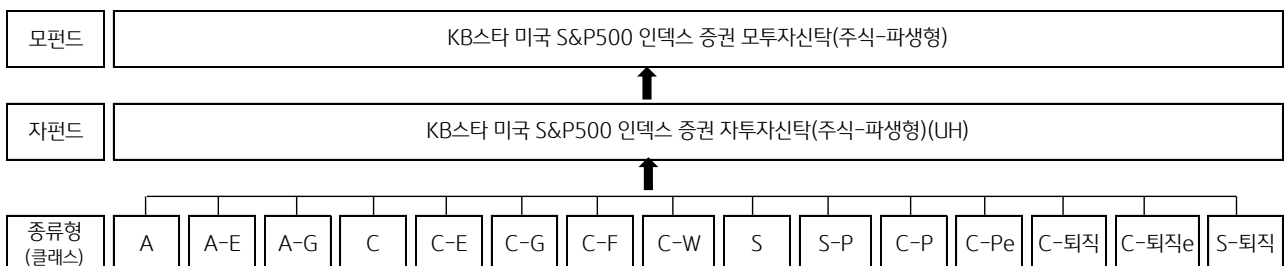
| 성명 | 주요 운용경력 | 성명 | 주요 운용경력 |
|-----|---|-----|-------------------------|
| 김정아 | 유진자산운용 리서치팀 1년 4개월 KB자산운용 인덱스퀀트운용본부 22년 1개월 | 이재민 | KB자산운용 인덱스퀀트운용본부 2년 6개월 |
| 윤여두 | 교보약사자산운용 주식운용팀/글로벌투자팀 5년 2개월 KB자산운용 인덱스퀀트운용본부 1년 | | |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덱스퀀트운용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과보수가 약정된 투자신탁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클래스) | | 투자신탁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

| | | |
|-------|------------|--|
| | |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 수수료 후취(S) |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판매 경로 | 온라인(E/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관련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무권유 저비용(G) |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 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 퇴직연금(퇴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 기관(F) |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이나,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랩,금전신탁(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입니다. |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클래스) | 가입자격 | 수수료 | | | 보수(연, %) | | | |
|-------------|--------------------|------------------|------|----|----------|------------|-------|------------|
| | | 선취판매 | 후취판매 | 환매 | 판매회사 | 집합투자 업자 | 신탁업자 | 사무관리 회사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제한없음 | 납입금액의 0.80%이내 | - | - | 0.350 | 0.495 | 0.040 | 0.015 |

| | | | | | |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온라인 가입 | 납입금액의 0.40%이내 | - | 0.175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판매회사 등 투자권유 없이 가입 | 납입금액의 0.56%이내 | - | 0.245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제한없음 | - | - | 1.000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온라인 가입 | - | - | 0.450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판매회사 등 투자권유 없이 가입 | - | - | 0.770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펀드, 기관투자자 등 | - | - | 0.030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좌, 특정금전신탁 | - | - | 0.000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운용사 공동판매채널 온라인 가입 |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0.150 |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운용사 공동판매채널 온라인의 연금저축용 | - | - | 0.140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연금저축용 | - | - | 0.683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온라인 가입 연금저축용 | - | - | 0.283 |
| C-퇴직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퇴직연금용 | - | - | 0.700 |
| C-퇴직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온라인 가입 퇴직연금용 | - | - | 0.350 |
| S-퇴직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운용사 공동판매채널 온라인의 퇴직연금용 | - | - | 0.120 |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적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 요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모투자신탁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자투자신탁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UH) |
| | 신탁재산의 90%이상 투자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모투자신탁 명칭 |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
|----------------|---|
| KB스타 미국 S&P500 | 주요투자대상 미국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60%이상, 채권 및 어음 50%미만 |

| | | |
|--------------------------|---------------------|--|
|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 탁(주식-파생형) | 투자목적 | 미국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S&P500지수 구성종목 및 주가지수선물)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함으로써 미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
| |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미국주식,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선물이나 상장지수투자신탁, 미국주식 등을 활용하여 비교지수인 S&P500지수 추종을 목표로 투자 2) 미국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금액, 주가지수선물 투자에 따른 증거금 납입 후 나머지 자금은 국내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 3) 외화표시 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됨. 다만, 자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수 있음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주식 및 미국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미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표시 자산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JH)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
| ①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 90%이상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집합투자증권 |
| ② 유동성자산 | 10%이하 |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 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③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
| ① | 미국주식 및 미국주식관련 파생상품 | 60%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중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 미국주식관련 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중 미국의 대표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 ② | 채권 | 50%미만 |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
| ③ | 어음 | 50%미만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
| ④ | 자산유동화증권 | 50%미만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⑤ | 집합투자증권 등 | 40%미만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 |
| ⑥ | 주식·채권 및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 | 40%이하 ^주 (위험평가액 기준) |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채권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다만,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
| | 채권 및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 |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다만,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
| ⑦ | 증권의 대여 | 증권의 50%이하 | |
| ⑧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 증권총액의 50%이하 | |

| | | |
|--|--|-------------|
| ⑨ | 증권의 차입 | 자산총액의 20%이하 |
| ⑩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신탁계약서 제4조의2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p>※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p> <p>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p> <p>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p> | | |
|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3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3월간</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3월간</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p> | | |
| <p>※ 채권 및 어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② 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p> | | |
| <p>※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 운용,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증권에의 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가. 증권에의 대여: 수수료 수취를 통한 수익률 증진, 매매 편의성 증대(ETF에 해당되는 경우로, ETF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하므로 시장조성자들은 호가 수량 확대 및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할 수 있음) 등</p> <p>나. 증권에의 차입: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p> | | |

주) 파생위험평가액은 향후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법령에 정한 한도 내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UH)의 투자제한

| 구분 | 내용 | 적용예외 |
|------|--|------|
| 단기대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투자제한

| 구분 | 내용 | 적용예외 |
|------|---|------|
| 단기대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의 | |

| | | |
|---|--|------------------|
| |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 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
| 동일종목 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 만, 다음 ①~③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①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 |
| | ②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①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마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 용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 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 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
| 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 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 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 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 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 다. | | |
|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운용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
|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투자신탁(법 제279조 제 1항의 외국투자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하 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할 수 있습니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 | |

| | | |
|--------------------------|---|---------------|
| |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동일회사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후순위채권 투자 |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투자한도 적용의 유예 |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

다. 모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미국 S&P500지수 추종을 목표로 운용하는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 자산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3)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전략 | | |
|---|-------|---|
| 1) 미국주식,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선물이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을 활용하여 비교지수인 S&P500지수 추종을 목표로 투자합니다. | | |
| 2) 미국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금액, 주가지수선물 투자에 따른 증거금 납입 후 나머지 자금은 국내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 | |
| <주된 운용 대상> | | |
| 투자 대상 | 기준 통화 | 비고 |
| S&P 500 주가지수선물 | 미국 달러 | 주된 투자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10~20%의 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달러로 환전하여 투자 |
| S&P 500 지수추종 ETF | 미국 달러 | S&P500 지수 관련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SPDR TRUST SERIES 1 등) |
| 미국 주식 | 미국 달러 | S&P500 지수 구성종목들에 필요에 따라 투자 가능 |
| 국내 채권/유동성 자산 | 원화 | 선물 증거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금액, 미국 주식 투자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국내 유동성자산 및 채권 등에 투자 |
| 3)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 ※ 비교지수: S&P500 지수(KRW) *100% | | |

※ 비교지수: S&P500 지수(KRW) *100%

▪ **정의:**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가 기업규모·유동성·산업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보통 주 500종목을 대상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80% 이상을 커버함

▪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은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으로 추종하는 미국의 대형주 지수인 상기 지수가 투자신탁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음

※ 비교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www.kbam.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임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서 위험관리 전략을, 자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 자산 투자에 따른 환위험관리 전략을 수행합니다.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 위험관리 전략 | 1)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

| | |
|--|--|
| | <p>2) 주가지수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방안: 이 투자신탁은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 추종이라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지수와의 비교지수 추적오차(Tracking Error)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추적오차 최소화를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합니다.</p> <p>3)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p> |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UH) | |
| 환위험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두투자신탁의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환헤지란?

환헤지는 외화자산 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3) 유동성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 1)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거나 매매가 가능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유동성 위험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 2)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거래 부진,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환매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환매연기 절차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후 보유 자산 매각 등으로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 된 이후 환매를 재개하거나 수익자 총회를 통해 결의한 방안 등에 따라 환매대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실자산 등이 발생하여 재산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부실자산의 상각 또는 부실자산과 매각 가능 자산을 분리하여 펀드를 설립할 수 있으며 매각 가능 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의 현금성 자산이 발생할 때마다 고객에게 투자비용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미국주식 및 미국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모두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미국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모두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전체(또는 일부)는 외국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 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두자산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미국주식 및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투자함으로써 미국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투자신탁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 환율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
|------|---|
| 국가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미국주식 및 미국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와의 물리적, 시간적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경제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

| | |
|--------------------------------|--|
| <p>비교지수와 괴리발생위험</p> | <p>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주식파생형 모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추종하기 위하여 해당 지수의 주가지수선물과 주식 및 ETF 등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요인 및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하여 비교지수와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물 투자시 현물과 선물가격의 차이(현선물 베이스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및 만기 도래시 재투자할 경우 팔고 사는 선물, 옵션 가격간의 가격차이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2)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투자되는 주가지수선물이나 ETF와 비교지수와 성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3) 투자하는 ETF의 증가와 NAV의 괴리/ETF별 운용방식에 따라 NAV와 추종 지수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4) 환헤지 시 완전헤지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환차익, 환차손 및 헤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5) 투자대상 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증가가격의 변동, 지수종목 교체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경우 6) 펀드규모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펀드 규모 대비 설정/헤지 규모가 클 경우 7) 펀드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증권의 차입, 해외보관대리인 비용 또는 환매조건부매도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8) 한국거래소 기준 영업일이 아닌 기간 중에 투자대상국가의 증권 또는 선물거래소는 영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권 또는 선물거래소 영업일 동안 발생한 'S&P500 지수'의 변동을 적절히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 |
| <p>베이스스 위험</p> | <p>투자금액 중 일부가 주가지수선물로 운용되므로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증가 기준 베이스스의 일시적인 가격불일치(mis-pricing)로 비교지수(벤치마크)와의 괴리가 발생하여 환매가격 및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 <p>베이스스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식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의 차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계약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접근하나,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 수급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변동의 위험으로 베이스스는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0'에 가까워지다가 결국 만기일에 '0'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이러한 시장을 정상시장 또는 콘탱고(contango)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시장을 역조시장 또는 백워드이션(back-wardation)이라고 합니다.</p> |
| <p>자금 송환 위험</p> | <p>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며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 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p>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
|------------------------------|--|
| <p>유동성위험</p> | <p>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
| <p>증권 대차거래 위험</p> | <p>증권 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 |
|----------------------------|---|
| <p>오퍼레이션 위험</p> | <p>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중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
| <p>환매에 따른 위험</p> | <p>환매청구일과 환매대금결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p> |
| <p>환매연기 위험</p> | <p>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거래부진,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 및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
| <p>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p> | <p>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분산투자 등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 인덱스 바스켓의 구성이 어려워 지수의 추적이 곤란하거나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p>투자신탁 해지의 위험</p> | <p>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
| <p>과세 위험</p> | <p>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및 자본이익, 주식 배당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p> |
| <p>기타 위험</p> | <p>- 설정/해지로 인해 변동성(beta)이 일시적으로 감소/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일 비교지수의 상승률에 대해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주식편입비중이 실제 편입비중과 달리 공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식 편입비중: 현물+선물, 공시 주식편입비중: 현물)</p> |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이 투자신탁은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주식 및 미국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하락과 환율변동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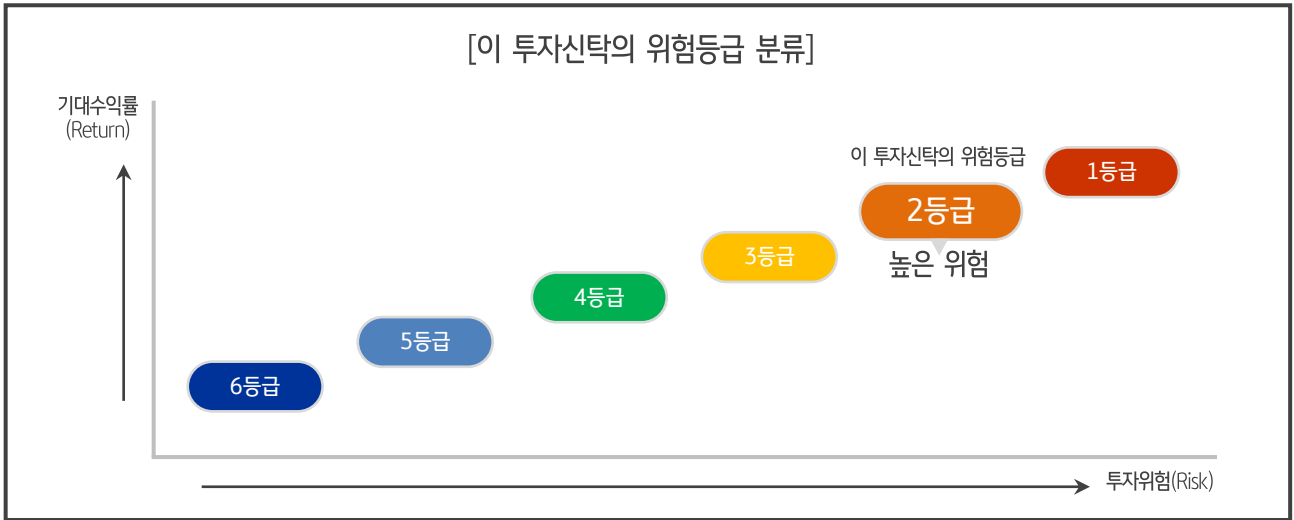
(2)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KB자산운용(주)는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 위험등급 |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
|-------------------|--|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보통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고위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5] 제35호 라 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음
5.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7.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개별펀드의 위험자산 투자비율은 운용전략·벤치마크(BM)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주) 이 기준은 KB자산운용(주) 내부기준으로 주로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가장 큰 리스크요인 사항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 분류 기준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1) 집합투자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 (2)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함)
 - 1)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1영업일(T) | 3영업일(T+2) | 4영업일(T+3) |
|---------------------|---------|------------------------|------------------------|
| 17시(오후 5시) 이전 매입시 | 자금납입일 |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
|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시 | 자금납입일 | |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선취판매수수료

-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80% 이내
- 2)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40% 이내
- 3) A-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56% 이내
- 4)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종류별 가입 요건

| 종류(클래스) | 가입자격 |
|---------|------|
|---------|------|

| | | |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가입제한 없음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가입하는 등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가입제한 없음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가입하는 등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금전신탁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전용으로 투자기간에 따라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됨 |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개인연금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 인연금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
| C-퇴직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
| C-퇴직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 직연금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
| S-퇴직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퇴직연금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

나. 환매

-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बैं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3영업일(T+2)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T+3)에 환매금액 지급
 -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제4영업일(T+3)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T+4)에 환매금액 지급

| | 제1영업일(T) | 제3영업일(T+2) | 제4영업일(T+3) | 제5영업일(T+4) |
|---------------------|----------|------------|------------|------------|
|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시 | 환매청구일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
|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시 | 환매청구일 |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1)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대금의 0.15% 이내

2)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4)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해 일부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날의 2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유동성 위험: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 허용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
| X | O | X |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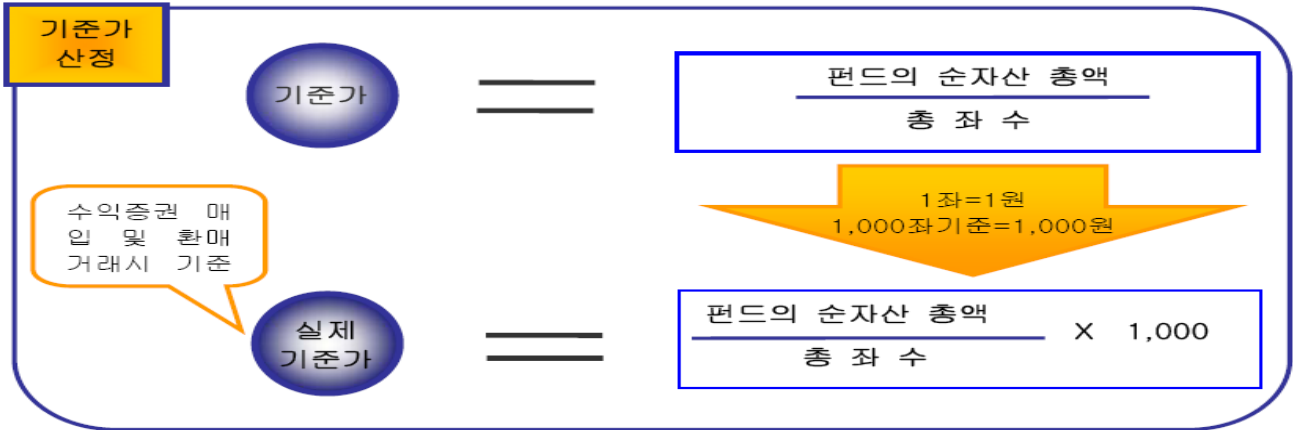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기준가격[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하지 않습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자산구분 | 평가기준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취득한 국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 비등록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
| 국내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국내 비상장채권 (CP, CD 포함)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외화표시 채무증권 |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
| 파생결합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또는 계산대리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

| | |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는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외국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펀드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펀드가 거래되는 외국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운용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며, 해당 평가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류(클래스) | | 수수료율 | |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납입금액의 0.80% 이내 | - | - | -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납입금액의 0.40% 이내 | - | - | -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납입금액의 0.56% 이내 | - | - | -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 - | - | -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 - | - | -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 - | - | -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 - | - | -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 - | - | - | -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 |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 | - | - | -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 - | - | -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 - | - | - |
| C-퇴직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 | - | - |
| C-퇴직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 | - | - |
| S-퇴직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 | - | - | - |
| 부과기준 |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종류 | 지급비용(연간, %) | | | | | | | | | |
|----------|-------------------|------------|------------|--------------------|--------------|-----------|-------------|--------------|-------------------|------------|
| | 집합투자 업자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투자신탁 총 보수 | 기타 비용 | 총 보수 ·비용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 총 보수 ·비용 | 증권거래 비용 |
| A | 0.495 | 0.350 | 0.040 | 0.015 | 0.900 | 0.008 | 0.908 | 0.900 | 0.900 | 0.030 |
| A-E | 0.495 | 0.175 | 0.040 | 0.015 | 0.725 | 0.003 | 0.728 | 0.740 | 0.728 | 0.029 |
| A-G | 0.495 | 0.245 | 0.040 | 0.015 | 0.795 | - | 0.795 | - | 0.795 | - |
| C | 0.495 | 1.000 | 0.040 | 0.015 | 1.550 | 0.001 | 1.551 | 1.550 | 1.551 | 0.022 |
| C-E | 0.495 | 0.450 | 0.040 | 0.015 | 1.000 | 0.002 | 1.002 | 1.010 | 1.002 | 0.024 |
| C-G | 0.495 | 0.770 | 0.040 | 0.015 | 1.320 | - | 1.320 | - | 1.320 | - |
| C-F | 0.495 | 0.030 | 0.040 | 0.015 | 0.580 | 0.002 | 0.582 | - | 0.582 | 0.031 |
| C-W | 0.495 | 0.000 | 0.040 | 0.015 | 0.550 | - | 0.550 | - | 0.550 | - |
| S | 0.495 | 0.150 | 0.040 | 0.015 | 0.700 | - | 0.700 | - | 0.700 | - |
| S-P | 0.495 | 0.140 | 0.040 | 0.015 | 0.690 | - | 0.690 | - | 0.690 | - |
| C-P | 0.495 | 0.683 | 0.040 | 0.015 | 1.233 | 0.000 | 1.233 | - | 1.233 | 0.027 |
| C-Pe | 0.495 | 0.283 | 0.040 | 0.015 | 0.833 | 0.010 | 0.843 | - | 0.843 | 0.025 |
| C-퇴직 | 0.495 | 0.700 | 0.040 | 0.015 | 1.250 | 0.000 | 1.250 | - | 1.250 | 0.028 |
| C-퇴직e | 0.495 | 0.350 | 0.040 | 0.015 | 0.900 | 0.025 | 0.925 | - | 0.925 | 0.023 |
| S-퇴직 | 0.495 | 0.120 | 0.040 | 0.015 | 0.670 | - | 0.670 | - | 0.670 | - |
| 지급 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 | | | 사유 발생시 | - | - | - | 사유 발생시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예시: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 총 보수·비용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합성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 투자비용에 따라 나눈 값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된 기타비용을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합산한 총 보수·비용을 순자산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text{합성 총 보수·비용비율(모펀드 포함)} = \frac{(\text{자펀드 기타비용} + \text{모펀드 투자비용에 따른 기타비용}) + \text{자펀드 총보수}}{\text{순자산 연평균잔액}} \times 100$$

*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A-E 클래스와 C-E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예시: 증권·선물·옵션 등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천원) |
|----|--------|
|----|--------|

| | |
|---------------|-----|
| 증권거래비용 | 538 |
|---------------|-----|

- ※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천원) |
|------|--------|
| 금융비용 | - |

- ※ 미설정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은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증권거래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발행분담금은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2. 투자신탁재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정보비용
 8.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건당 결제 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보관비용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타 부수비용(out 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해당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 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단위: 천원)

| 종류(클래스)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 | | |
|---------|---------------------|---------------|-----|-----|-----|-------|
| |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171 | 266 | 365 | 576 | 1,185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114 | 192 | 272 | 445 | 946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137 | 221 | 309 | 496 | 1,040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158 | 322 | 491 | 847 | 1,854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103 | 209 | 320 | 555 | 1,233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 135 | 274 | 419 | 726 | 1,597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60 | 122 | 187 | 326 | 733 |

| | | | | | | |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 | 56 | 115 | 177 | 308 | 693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72 | 146 | 224 | 391 | 876 |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71 | 144 | 221 | 385 | 863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126 | 257 | 392 | 679 | 1,499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86 | 176 | 270 | 469 | 1,046 |
| C-퇴직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128 | 260 | 397 | 688 | 1,518 |
| C-퇴직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95 | 193 | 295 | 514 | 1,143 |
| S-퇴직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69 | 140 | 215 | 375 | 839 |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율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이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 (3)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납입 가능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연간 저축금액(최대 6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 |
|-------------------|--|
| |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또는 16.5%)로 세액공제 효과,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가능 |
|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
| 분리과세한도 | 연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또는 15%(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분리과세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해지가산세 | 해당사항 없음 |
|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일반해지시 과세 |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2%(또는 15%)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또는 16.5%)로 세액공제 효과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단위: 원)

| 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 1기 | | |
| | 2026.06.01 | | |
| 운용자산 | 14,259,229,390 | | |
| 증권 | 13,320,581,602 | | |
| 파생상품 | 0 | | |
| 부동산/실물자산 | 0 | | |
| 현금 및 예치금 | 938,647,788 | | |
| 기타 운용자산 | 0 | | |
| 기타자산 | 212,815,856 | | |
| 자산총계 | 14,472,045,246 | | |
| 운용부채 | 0 | | |
| 기타부채 | 197,947,386 | | |
| 부채총계 | 197,947,386 | | |
| 원본 | 12,622,891,694 | | |
| 수익조정금 | 484,596,461 | | |
| 이익잉여금 | 1,260,498,629 | | |
| 자본총계 | 14,274,097,860 | | |

(단위: 원, %)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1기 | | |
| | (2026.01.23 ~ 2026.06.01) | | |
| 운용수익 | 1,279,715,909 | | |
| 이자수익 | 2,761,355 | | |
| 배당수익 | 0 | | |
| 매매/평가차익(손) | 1,276,954,554 | | |
| 기타수익 | 0 | | |
| 운용비용 | 18,846,792 | | |
| 관련회사 보수 | 18,846,792 | | |
| 매매수수료 | 0 | | |
| 기타비용 | 370,488 | | |
| 당기순이익 | 1,260,498,629 | | |
| 매매회전율 | 0.97 | | |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이익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당기 매매회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 되었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기 보유 주식 평균금액(B) | 매매회전율 (A/B)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208 | 43 | 289 | 42 | 4,348 | 0.97 | 32.35 |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기준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1기 |
|---------|-----|
| 증권대여 수익 | 0 |
| 증권차입 비용 | |

주3) 기타비용에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자산별 거래금액 및 거래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 | 전기 | | |
|-----------------|---------|-------|---------|---------|-------|---------|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 |
| | | 금액(B) | 비율(B/A) | | 금액(B) | 비율(B/A) |
| 주식 | 86 | 0 | 0.08 | | | |
|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 488 | 0 | 0.08 | | | |
| 장내파생상품 | 4,500 | 0 | 0.00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
| 합계 | 5,074 | 1 | 0.01 | | | |

※ 주1)~주3)에 기재된 수치는 모자형투자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른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 과 목 | 제1기 (2026.06.01) | | | | |
|-----------------------------|------------------|----------------|---------------|--|--|
| | 금 | 액 | | | |
| 자 산 | | 0 | | | |
| 운 용 자 산 | | 0 | | | |
| 현금및예치금 | | 938,647,788 |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938,647,788 | | | | |
| 2. 예치금 | 0 | | | | |
| 3. 증거금 | 0 | | | | |
| 대출채권 | | 0 | | | |
| 1. 콜론 | 0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0 | | | | |
| 3. 매입어음 | 0 | | | | |
| 4. 대출금 | 0 | | | | |
| 유가증권 | | 13,320,581,602 | | | |
| 1. 지분증권 | 0 | | | | |
| 2. 채무증권 | 0 | | | | |
| 3. 수익증권 | 13,320,581,602 | | | | |
| 4. 기타유가증권 | 0 | | | | |
| 파생상품 | | 0 | | | |
| 1. 파생상품 | 0 | | | | |
| 부동산관 실물자산 | | 0 | | | |
| 1. 건물 | 0 | | | | |
| 2. 토지 | 0 | | | | |
| 3. 농작물 | 0 | | | | |
| 4. 축산물 | 0 | | | | |
| 기타운용자산 | | 0 | | | |
| 1. 임차권 | 0 | | | | |
| 2. 전세권 | 0 | | | | |
| 기타자산 | | 212,815,856 | | |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98,583,370 | | | | |
| 2. 정산미수금 | 0 | | | | |
| 3. 미수이자 | 53,232 | | | | |
| 4. 미수배당금 | 114,179,254 | | | | |
| 5. 기타미수입금 | 0 | | | | |
| 6. 기타자산 | 0 | | | | |
| 7. 수익증권청약금 | 0 | | | | |
| 자 산 총 계 | | 14,472,045,246 | | | |
| 부 채 | | 0 | | | |
| 운용부채 | | 0 | | | |
| 1. 옵션매도 | 0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0 | | | | |
| 3. 기타 운용부채 | 0 | | | | |
| 기타부채 | | 197,947,386 | | |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0 | | | | |
| 2. 정산미지급금 | 0 | | | | |
| 3. 해지미지급금 | 187,777,848 | | | | |
| 4. 수수료미지급금 | 10,169,538 | | | | |
| 5. 기타미지급금 | 0 | | | | |
| 6. 기타부채 | 0 | | | | |
| 부 채 총 계 | | 197,947,386 | | | |
| 자 본 | | 0 | | | |
| 1. 원본 | 12,622,891,694 | | | | |
| 2. 이익잉여금 | 1,745,095,090 | | | | |
| (발행좌수 당기 : 12,622,891,694 좌 | | 이익잉여금 | 1,260,498,629 | | |
| 전기 : 0 좌 | | 수익조정금 | 484,596,461 | | |
| 전전기 : 0 좌) | | | | | |
| (기준가격 당기 : 1,144.39 원 | | | | | |
| 전기 : 0.00 원 | | | | | |
| 전전기 : 0.00 원) | | | | | |
| 자 본 총 계 | | 14,274,097,860 | |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14,472,045,246 | | | |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 과 목 | 제1기 (2026.01.23 ~ 2026.06.01) | | | | | |
|-------------------|-------------------------------|---------------|--|--|--|--|
| | 금 액 | | | | | |
| 운 용 수 익 | | 1,279,715,909 | | | | |
| 1. 투자수익 | | 2,761,355 | | | | |
| 1. 이 자 수 익 | 2,761,355 | | | | | |
| 2. 배당금 수익 | 0 | | | | | |
| 3. 수수료수익 | 0 | | | | | |
| 4. 임대료수익 | 0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1,281,824,155 | | | | |
|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 0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0 | | | | | |
|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 1,281,824,155 | | | | | |
|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0 | | | | | |
|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0 | | | | | |
| 6. 외환거래/평가차익 | 0 | | | | | |
| 7. 기타이익 | 0 | | | |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9,596,734 | | | | |
|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 0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0 | | | | | |
|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 9,596,734 | | | | | |
|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 0 | | | | | |
|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0 | | | | | |
| 6. 외환거래/평가차손 | 0 | | | | | |
| 7. 대손상각비 | 0 | | | | | |
| 8. 기타차손 | 0 | | | | | |
| 운 용 비 용 | | 19,217,280 | | | | |
| 1. 운용수수료 | 10,699,838 | | | | | |
| 2. 판매수수료 | 7,282,818 | | | | | |
| 3. 수탁수수료 | 864,136 | | | | | |
| 4. 투자자문수수료 | 0 | | | | | |
| 5. 임대자산수수료 | 0 | | | | | |
| 6. 기 타 비 용 | 370,488 | | | | | |
| 당기순(손실)이익 | | 1,260,498,629 | | | | |
| 1. 1000좌당 순(손실)이익 | | 100 | | |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6.01.23 ~ 2026.06.01 | 0 | 0 | 15 | 16 | 2 | 2 | 14 | 16 |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6.01.23 ~ 2026.06.01 | 0 | 0 | 10 | 10 | 2 | 2 | 7 | 8 |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6.01.23 ~ 2026.06.01 | 0 | 0 | 3 | 3 | 0 | 0 | 3 | 3 |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6.01.23 ~ 2026.06.01 | 0 | 0 | 8 | 8 | 1 | 1 | 7 | 8 |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6.01.23 ~ 2026.06.01 | 0 | 0 | 2 | 2 | 0 | 0 | 2 | 2 |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6.01.23 ~ 2026.06.01 | 0 | 0 | 0 | 0 | 0 | 0 | 0 | 0 |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6.01.23 ~ 2026.06.01 | 0 | 0 | 27 | 28 | 4 | 4 | 23 | 26 |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6.01.23 ~ 2026.06.01 | 0 | 0 | 1 | 1 | 0 | 0 | 1 | 1 |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단위: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 | | | | | | | |
| 2026.01.23 ~ 2026.06.01 | 0 | 0 | 77 | 81 | 8 | 9 | 69 | 78 |

※ 각 회계연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설정 후 1년 미경과로 기재하지 않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설정 후 1년 미경과로 기재하지 않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단위: 억원, %, 기준일: 2026년 06월 0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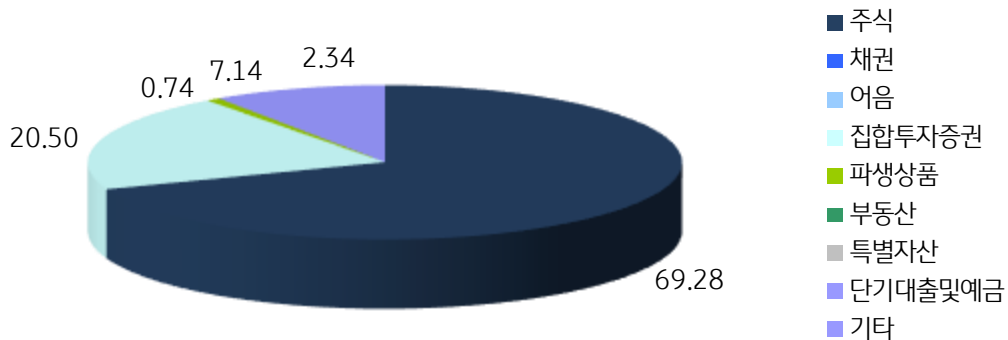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KRW | 0 | 0 | 0 | 2 | 0 | 0 | 0 | 0 | 0 | 10 | -1 | 12 |
| | (0.00) | (0.00) | (0.00) | (19.39) | (0.00) | (0.00) | (0.00) | (0.00) | (0.00) | (87.67) | -(7.06) | (100.00) |
| USD | 100 | 0 | 0 | 27 | 1 | 0 | 0 | 0 | 0 | 0 | 4 | 133 |
| | (75.35) | (0.00) | (0.00) | (20.60) | (0.80) | (0.00) | (0.00) | (0.00) | (0.00) | (0.09) | (3.16) | (100.00) |
| 합계 | 100 | 0 | 0 | 30 | 1 | 0 | 0 | 0 | 0 | 10 | 3 | 145 |
| | (69.28) | (0.00) | (0.00) | (20.50) | (0.74) | (0.00) | (0.00) | (0.00) | (0.00) | (7.14) | (2.34) | (100.00) |

※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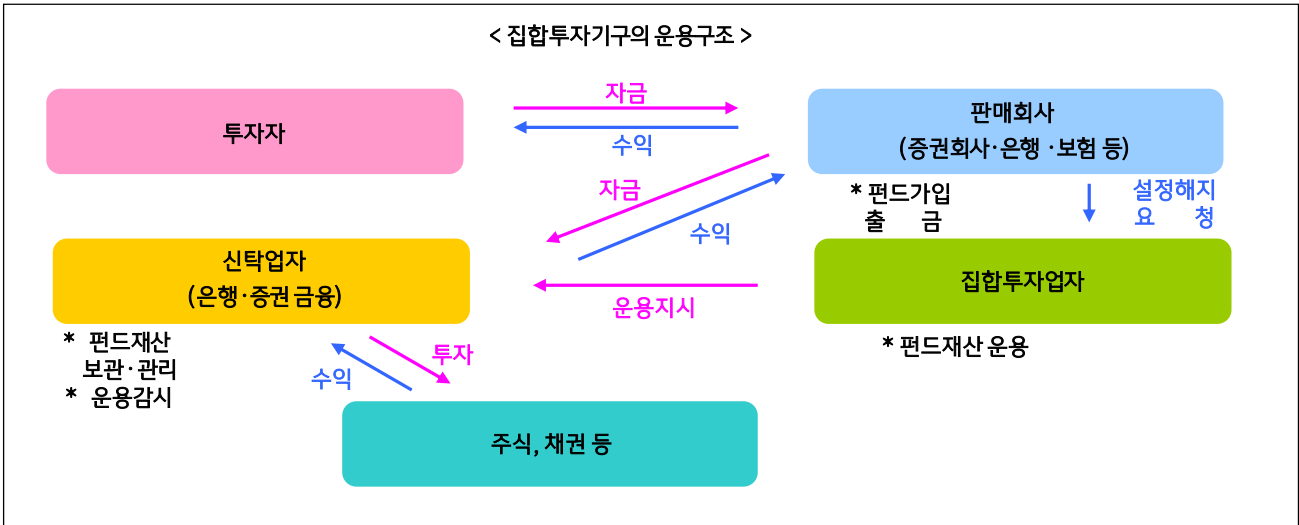
※ 어음에는 CD를 포함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별 종목을 해당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여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KB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2167-8200 |
| 주요 연혁 | 1988.04.28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주)'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주은투자자문(주)'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주)'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주)'에서 'KB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주)국민은행 → (주)KB금융지주) |
| 자본금 | 38,337,750,000원 |
| 주요주주 | (주)KB금융지주 100% |
| 투자신탁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케이비펀드파트너스(계열회사) |

나. 주요 업무

-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4)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38기 | 제37기 |
|--------------------|----------------|----------------|
| 기 간 | 2025.12.31 | 2024.12.31 |
| 현금 및 예치금 | 126,200 | 39,01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477,575 | 290,75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41 | 472 |
| 관계기업투자주식 | 7,482 | 7,146 |
| 파생상품자산 | 333 | 5 |
| 대출채권 | 4,802 | 4,210 |
| 유형자산 | 16,760 | 15,251 |
| 기타금융자산 | 46,070 | 39,002 |
| 이연법인세자산 | 7,900 | 7,913 |
| 기타자산 | 9,941 | 11,173 |
| 자산총계 | 697,405 | 414,942 |
| 예수부채 | 4,000 | 13,709 |
| 파생상품부채 | 7 | 996 |
| 차입부채 | 20,009 | - |
| 기타금융부채 | 208,729 | 58,820 |
| 총당부채 | 1,525 | 1,498 |
| 순확정급여부채 | 297 | 165 |
| 기타부채 | 67,805 | 45,037 |
| 부채총계 | 302,373 | 120,224 |
| 지배기업주주지분 | 394,263 | 294,383 |
| 자본금 | 38,338 | 38,338 |
| 자본잉여금 | -1,417 | -1,41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75 | 922 |
| 이익잉여금 | 355,568 | 256,541 |

| | | |
|-----------|---------|---------|
| 비지배지분 | 769 | 335 |
| 자본총계 | 395,032 | 294,718 |
| 부채 및 자본총계 | 697,405 | 414,942 |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38기 | 제37기 |
|-------------|-----------------------|-----------------------|
| 기 간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 영업수익 | 325,721 | 246,184 |
| 영업비용 | 166,092 | 156,556 |
| 영업이익 | 159,629 | 89,628 |
| 영업외수익 | 1,754 | 740 |
| 영업외비용 | 1,369 | 2,21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0,014 | 88,148 |
| 법인세비용 | 40,000 | 21,776 |
| 당기순이익 | 120,014 | 66,372 |
| 기타포괄이익 | 840 | 1,284 |
| 총포괄이익 | 120,853 | 67,657 |

라. 운용자산 규모

(2026년 06월 02일 현재, 단위: 억좌)

| 투자신탁종 류 | 증권 | | | | | 부동산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MMF | 총 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파생상품형 | 재간접형 | | | | | |
| 수탁고 | 226,705 | 61,005 | 190,690 | 78,899 | 72,311 | 82,497 | 178,533 | 37,322 | 225,185 | 1,153,145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신탁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신한은행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 대경빌딩 |
| 전화번호 | ☎ 1599-8000/1577-8000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shinhan.com |

나. 주요 업무

-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 (2)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주)케이비펀드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
| 전화번호 | ☎ 02-2073-0595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fps.com |

나. 주요 업무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
|----------|--|--|--|--|
| 회사명 | KIS자산평가(주) | 한국자산평가(주) | NICE 피앤아이(주) | 에프앤자산평가(주)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
| 전화번호 | ☎ 02-3215-1450 | ☎ 02-399-3350 | ☎ 02-398-3900 | ☎ 02-721-5300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ond.co.kr | www.koreaap.com | www.npricing.co.kr | www.fnpricing.com |

나. 주요 업무

-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서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1)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5)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1)~4) 내용 중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은 "발행된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봅니다.
- (3) 연기수익자총회
 -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 투자신탁의 합병
-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6)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열람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¹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주체¹: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매일경제신문(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경향신문 포함)에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집합투자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방안]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소규모 투자신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자 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 (2)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됩니다.
- (3)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운용전략 등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또는 '다른 모투자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4) 집합투자업자가 '임의해지',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및 '다른 모투자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시기를 정하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투자신탁 등 세제혜택을 받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세제적격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 (3)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 후 2월 이내에 법 제 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라)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

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나)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4) 파생상품 관련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계약금액
 -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가)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 (나) (가)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 펀드명 | 이해관계인 | | 거래의 종류 | 자산의 종류 | 거래 금액 |
|---------------------------------|--------|------|--------|--------|-------|
| | 성명(상호) | 관계 | | | |
| KB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모(주식-파생형) | KB증권 | 계열회사 | 위탁거래 | 채권 | 0 |
| | KB증권 | 수탁 | 위탁거래 | 채권 | 0 |
| | KB증권 | 자판 | 위탁거래 | 채권 | 0 |
| | KB증권 | 판매 | 위탁거래 | 채권 | 0 |

나.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구 분 | 중개회사의 선정 기준 |
|---------------------|--|
|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 <p>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주) 내부통제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p> <p>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p> <p>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제1호 가 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의무(책임) 투자
 -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의무(책임)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합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 어 | 내 용 |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집합투자증권 |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해당 모펀드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